

고성군울대농공단지오·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
(의안번호 제682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3. 14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2001. 3. 16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1. 3. 26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제안이유

- 행정규제사무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사무 정비와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가. 조례명칭 및 관할 처리업체 상호변경(안 제1조 및 제2조)
나. 사업자(장)의 변소를 수세식으로 하는 의무규정 삭제(안 제11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는 의무규정 사항을 삭제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의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조례의 제명과 명칭변경 및 사업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사무 등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 : 2001. 3. 2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